

| | |
|--------|-------------|
| 문서관리번호 | HEC-BM-A10 |
| 최종 수정일 | 2020. 7. 30 |
| 문서 관리자 | 준법지원팀 |

현대엔지니어링 윤리준법 헌장 및 윤리준법강령

2020. 7.

목 차

| | |
|-----------------------|----|
| 서문 | 2 |
| 1. 제정목적 | 2 |
| 2. 적용범위 | 2 |
| 윤리준법현장 및 윤리준법강령 | 3 |
| 1. 임직원 윤리 | 4 |
| 2. 공정한 경쟁과 거래 | 5 |
| 3. 고객가치 실현 | 6 |
| 4. 임직원 존중 | 7 |
| 5. 지속가능성 추구 | 8 |
| 경영 시스템 | 9 |
| 부록 | 10 |
| 1. 담당 연락처 | 10 |
| 2. 참고문헌 | 10 |

서문

1. 제정목적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회의 꿈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 윤리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바,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개정하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의 적용대상은 국내·외 현장 및 지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를 포함하며,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은 발주처 및 협력업체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의 에 따라 행동한다.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이 적용되는 회사는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 정책,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 관련 규정, 정책, 지침 등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 1

[현대엔지니어링 5 대 윤리준법헌장]

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을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3.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5.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¹ 임직원들은 윤리준법헌장과 윤리준법강령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는 약속으로 윤리실천 서약을 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윤리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²

| | |
|------------------|---|
| 뇌물 |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 ³ 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
| 청탁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
| 이해관계 상충 |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
| 내부자 거래 |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 ⁴ 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직장윤리 |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 직권남용 |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 문서작성 및 보고 |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

² 이와 관련된 윤리준법규정으로 직장인 기본윤리 규정(HEC-BM-A02) 및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HEC-BM-A03)이 있다.

³ 뇌물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⁴ 내부자 거래에는 흔히 회사의 기밀, 지식, 영업정보,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정보, 주가 관련 정보, 내부 의사결정사항 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2. 공정한 경쟁과 거래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⁵

| | |
|--------------|--|
| 반독점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담합 |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
| 부정경쟁 |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 자금세탁 |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지식재산권 |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조세 |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
| 조달 |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⁵ 이와 관련된 윤리준법규정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HEC-GH-A05), 하도급법규 준수규정(HEC-GM-E03), 하도급관리규정(HEC-GM-E04, HEC-GM-H01, HEC-GM-H02), 협력업체 관리규정(HEC-GM-E01, HEC-GM-G03)이 있다.

3. 고객가치 실현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⁶

| | |
|-----------------|---|
| 고객 안전 |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설계, 시공 및 하자보수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
| 품질 |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완전한 정보제공 |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 개인정보 보호 |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고객의견 수렴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
| 고객 접근성 |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하자담보책임 |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시공 및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

이와 관련된 윤리준법규정으로 안전·보건경영 매뉴얼(HEC-AH-001), 안전보건 관리 규정(HEC-AH-E01), 품질경영매뉴얼(HEC-PJ-001), 품질 방침 및 목표 관리 규정(HEC-PJ-A09), 정보보호경영 매뉴얼(HEC-BA-001), 정보보안 관리 규정(HEC-BA-A01), 개인정보 관리 규정(HEC-BA-A02)이 있다.

4. 임직원 존중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 |
|--------------------|--|
| 인권 |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 차별 |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 동등한 기회 |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 직장 괴롭힘 |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 안전 및 보건 |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
| 일·가정 양립 |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지속가능성 추구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⁷

| | |
|-----------------|--|
| 지속가능한 발전 |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
| 환경 |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
| 사회공헌 |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 이해관계자 참여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
| 기부 및 후원 |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
| 주주가치 |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
| 정보공개 |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

⁷ 이와 관련된 윤리준법규정으로 환경경영매뉴얼(HEC-AH-002), 환경관리규정(HEC-AH-E18)이 있다.

경영 시스템

| | |
|-------------------|--|
| 조직 책임자의 책무 |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적용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
| 조직 및 보고 |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
| 모니터링 및 실사 |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 내부통제 |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24 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 내부 고발자 보호 |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 개정 |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해야 한다. |
| 교육 |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적용하는 조직은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처리 |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
| 위반 정보공개 |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부록

1. 담당 연락처

윤리 관련 상담 및 제보처리 창구

- 홈페이지 : <https://audit.hec.co.kr/>(사이버감사실)
- 전화 : 02-2134-1788(감사실) / 02-2134-1118(준법지원팀)
- 팩스 : 02-2038-6443(감사실) / 02-2038-6447(준법지원팀)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별관 8 층 감사실 / 법무실 준법지원팀

2. 참고문헌

본 윤리준법헌장 및 윤리준법강령은 여러 국제 인권규범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며, 아래의 선언 및 협약을 기반으로 제정하였다.

- ①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세계인권선언), UN General Assembly, 1948.
- ②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 ③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LO (1998).
- ④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2019).
- ⑤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General Assembly (2013).
- ⑥ Paris Agreement, UNFCCC (2015).
- ⑦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2011).
- ⑧ 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 Drive Sustainability (2017).
- ⑨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C (2011).
- ⑩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2010).
- ⑪ UN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 ⑫ CDP (<https://www.cdp.net/en>)